

『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이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되어 개정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 업무가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제명을 “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”에서 “구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”로 개정
- 조례의 “친환경상품”을 “녹색제품”으로 용어 변경
- 녹색제품의 정의를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으로 변경(안 제2조)
- 「환경정책기본법」 개정에 따라 “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” 조항 폐지(안 제5조~제9조) : 구미시녹색성장위원회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의 주요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
-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·공표 기한 변경에 따른 관련내용 정비(안 제11조)
- 녹색제품 구매실적 공표주체가 시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

- 된 사항과 구매실적 집계 사항 관련내용 정비(안 제12조)
-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 정비(안 제15조)
 - 교육훈련 지원기관 변경(안 제16조)
 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1)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 - 2)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
 - 3) 「환경정책기본법」
 - 4)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
 - 5) 「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」
 - 6) 「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」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합 의 : 녹색정책담당관실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규제심사 이견없음

5. 검토의견

- ☐ 본 「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은,
- 상위법인 「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이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 변경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명 변경 및 관련용어·조문정비
(안 제1조, 제2조, 제10조~제23조)
-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 정비(안제15조)
- 「환경정책기본법」 개정에 따라 “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” 조항 폐지(안 제5조~제9조)
-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·공표 기한 변경에 따른 관련내용 정비(안 제11조)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명 변경 및 관련 용어정비 등 개정
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